



요 약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및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 관련 제재 합리화,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6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실에 의한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개정안 제196조 제1항 제9호)

-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
 - 현재 기초서류 준수 의무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일률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중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¹⁾
- 또한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기초서류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
 -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에는 단순히 수입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 관련 제재 합리화(개정안 제209조 제1항 제10호의2)

- 현행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미계상하거나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개정안은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의 과다 계상에 대해서는 “고의에 의한 과다 계상”만을 제재하고 보험회사의 과실에 의한 과다 계상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책임준비금 과다 계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개정안 제209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7항 제18호)

-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금지행위 위반²⁾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개정안 제175조 제3항 제1호의3 및 제4항)

- 보험업법은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민원 처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협회의 업무에 대해서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개정,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업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위임에 부수하는 업무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회원사 간 자율조정 사항 등 보험협회가 상담·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임³⁾
 -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소를 추진하려는 취지임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개정안 제8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 제136조 제1항)

-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가중제재에 있어 기산점을 도입하고자 함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위와 같은 가중제재의 대상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행위”로 인해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보험설계사에 대한 가중제재 시 기산점을 도입하는 내용임
 - 최초 제재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는 가중제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만 가능함

2)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항 제1호(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2호 내지 제7호(지연·부실 손해사정, 개인정보 누설,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또는 합의 요구 등)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으며, 이에 위조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임

3) 또한 보험협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및 검사에 대한 규정(보험업법 제133조) 및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규정(보험업법 제134조)을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⁴⁾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자 함

○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개정안 제85조 제3항 제4호)

- 현행 보험업법은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 1사 전속주의를 채택하면서 다만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1개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⁵⁾을 하는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도 허용하고자 함
 - 보험업 허가정책 유연화(1사 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 이후 상품별로 특화된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4) 현재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준용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보험설계사의 경우 해당 조항이 준용되고 있지 않음

5)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를 말함